[서식 예] 무단형질변경 원상복구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의 소



소 장

원 고 O O (주민등록번호) OO시 OO구 OO길 OO (우편번호 OOO-OOO)

피 고 △ △ 시장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무단형질변경원상복구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가 20○○. ○. ○. 원고에 대하여 제324호로 한 무단형질변경원상복구대집 행계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파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워 인

- 1. 원고는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토지형질변경에 앞서 도시계획구획안에 있는 〇〇 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 354㎡ 및 인접한 같은 동 〇〇의 〇 전 149㎡ 를 합필하였습니다.
- 2. 원고의 20〇〇. 〇. 〇.자 토지형질변경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토지 위에 폭 4m 의 도로를 개설하여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킨다는 부담을 붙여 형질변경을 허가하겠다고 하여 이에 원고는 기부채납의 부관에 대해서 '무상귀속은 거부한다'라는 의사표시의 내용증명을 보내자 20〇〇. 〇. 〇.자로 이를 이유로 토지형 질변경불허 및 원고 위 토지에 인접하여 원고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같은 동

○○○-8에 대한 원상복구를 한다며 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습니다.

- 3. 그러나 원고가 토지형지변경을 신청한 토지 및 위 원상복구 토지는 원래 ♣ 제동 ○○○번지의 한 필지 토지로 소외 김영철의 토지로 19○○. ○. ○. 각각으로 분할되어 나왔고 현재 모두 도로에 인접하여 있고 그 지목은 전이나 지면이 평평해져 등 대지화 되었으며 특히 위 ○○○-8번지의 토지는 19○○. ○. ○.부터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, 주위에 이미 폭 3m의 도로가 있어 별도의 통행로가 필요 없으며, 이를 개설할 경우 소외 □□□만을 위한 도로로 위 부관처분은 원고나 공익을 위한 도로개설이 아님에도 부관을 붙인 처분은 위법하며, 특히 245-8번지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동안 전혀 문제를 삼지않다가 원고가 피고의 부관을 붙인 행정처분을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자 위 관저동 ○○○-8번지에 대한 토지를 원상복구 한다며 대집행계고처분을 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입니다.
- 4. 따라서 피고의 무단형질변경원상복구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 (원고는 위 처분을 20 OO. O. O. 우편송달로 알게 되었습니다.)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

1. 갑 제2호증 토지대장

1. 갑 제3호증 지적도

1. 갑 제4호증 대집행계고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납부서 1통



20ㅇㅇ년 ㅇ월 ㅇ일

원 고 ㅇㅇㅇ (인)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※ 아래(2) 참조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
제출부수	소장 1부와 상대방수 만큼 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 9 ~ 34조
비용	・인지액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・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방법 및 기 간	· 항소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0조) ·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6조)		

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 법원임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

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